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45
----------	------

제안연월일 : 2022. 11. 9.

제안자 : 최훈중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잘못된 법령명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용어의 통일성 있는 정비를 위해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안’ 을 ‘고려’ 로, ‘저해하는’ 을 ‘해치는’ 로 정비
(안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호)
- 인용 법령명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수정
(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3. 수정조례안 : 덧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안” 을 “고려” 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저해하는” 을 “해치는” 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

--- 초화류(草花類) ---

-----.

제11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개정안과 같음)

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환불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 7.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38

조제5항-----

-----.

제25조(점용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저수조(貯水槽) -----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점용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행위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공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9조의2(주차료의 감면) ①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제29조의2(주차료의 감면) ① -----

-----.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

1. 2. (현행과 같음)

3. -----
해치는 -----

제29조의2(주차료의 감면) ①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개정안과 같음)

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3. · 4. (생략)

5.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6. 「하남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장 주차

3. · 4. (현행과 같음)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 50시간 -----
----- 하남시 자원봉사자는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임---

3.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7. · 8. (생 략)

9. 「5·18민주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
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
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
0퍼센트 경감)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4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9. 「5·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
조제2호-----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의(開議)하고---

③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